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9765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7. 6.

발 의 자 : 배준영 · 박대출 · 이상휘
김은혜 · 안철수 · 곽규택
김미애 · 서명옥 · 강명구
정동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(이하 “주주등”이라 함)로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며,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또한,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한편,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양도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.

이러한 과세특례는 중소·중견기업의 자본 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

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21조의28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1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기한까지,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(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(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9에서 “금융채권자”라 한다)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)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

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

 -----2027년 12월 31일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 -----2027년 12월 31일

당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
“양도차익상당액”이라 한다)은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
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
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
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④ ~ ⑦ (생략)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